

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 례 안

(17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조례명	쪽수
2024-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
202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21
2024-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행정과)	31
2024-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37
2024-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45
2024-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인구교육과)	55
2024-75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65
2024-76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72
2024-77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행복나눔과)	82
2024-78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나눔과)	93
2024-79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	110
2024-80	거창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안전총괄과)	117
2024-81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산림과)	126
2024-82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133
2024-83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행복농촌과)	156
2024-84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	168
2024-85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	172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감사원 감사 관련 법령불부합 사항, 행정안전부 발굴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용어 및 인감증명서 요구사항, 여성가족부 권고사항 등의 정비를 위해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원 감사 관련 법령불부합 정비

1)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개선함(안 제1조)

가)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2) 수탁자 등의 책임범위를 개선함(안 제1조~제3조)

가)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나)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다)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3) 행정재산의 원상복구 절차를 개선함(안 제4조)

가)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나. 행정안전부 발굴 장애인 용어 및 인감증명서 정비(안 제5조·제6조)

1)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2)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다.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제7조·제8조)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양성평등기본법」: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거창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여성가족부 권고)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민법」 제75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 「행정대집행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0. 29.~11. 1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한다.

제2조(「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4조(「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실명란 중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한다.

제6조(「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한다.

제7조(「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7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7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8조제2항제3호”를 “법 제40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거창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창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윤락”을 “성매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
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감사원 감사 관련 법령불부합 사항

가.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여성가족부 권고 포함)

현행	개정안
<p>제7조(기구 및 인원) ① 삶의 쉼터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은 통합하여 운영하되, 「노인복지법」, 「<u>여성발전기본법</u>」 및 「장애인복지법」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0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5.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 해지를 합의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수탁시설 관리·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거창군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와 그 귀속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삶의 쉼터의 시설 또는 비품 등을 망실, 훼손하였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를 하거나</p>	<p>제7조(기구 및 인원) ① 삶의 쉼터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은 통합하여 운영하되, 「노인복지법」, 「<u>양성평등기본법</u>」 및 「장애인복지법」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자의 손해배상 범위개선</p> <p><삭 제>수탁자 등의 책임범위 개선</p>

<p><u>배상하여야 한다.</u></p> <p>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을 준용한다.</p>	<p>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한다.</p>
---	---

나.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u>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잃어버리거나 파손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삭 제>수탁자 등의 책임범위 개선</p>

다.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p>제13조(손해배상 등) ① <u>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p> <p>② <u>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u></p>	<p><삭 제>수탁자 등의 책임범위 개선</p>

라.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p>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문화센터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장치 및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p> <p>③ <u>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자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된 시설물을 철거일로 부터 7일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u></p>	<p><삭 제> 행정재산의 원상복구 절차 개선</p>

□ 용어순화, 인감증명서 삭제,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

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행정안전부 정비권고)

현행	개정안
<p>[별표 2]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제41조 관련)</p> <p>5. 보건소 장애자용 화장실</p>	<p>[별표 2]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제41조 관련)</p> <p>5. 보건소 장애인용 화장실</p>

바.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행정안전부 정비권고)

현행	개정안
<p>[별지 제8호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p>	<p>[별지 제8호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p>

사.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경우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이하 “읍면”이라 한다)에 ○○읍면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조(설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7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경우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이하 “읍면”이라 한다)에 ○○읍면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3조(기능)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에 따른 주민총회 운영 2. 제16조에 따른 자치계획의 수립 3.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등 	<p>제3조(기능) 법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에 따른 주민총회 운영 2. 제16조에 따른 자치계획의 수립 3.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등
<p>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4.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p>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4.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③ (생략)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	---

아. 거창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여성가족부 권고)

현행	개정안
<p>제3조(출입제한구역)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u>윤락</u>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4.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출입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5. <u>기타</u>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p>제3조(출입제한구역)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u>성매매</u>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4.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출입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5. <u>그 밖에</u>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 검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옮겨심기에 필요한 경비
3.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옮겨 심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계산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법인등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시행 2022. 12. 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위탁재산의 관리·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함에 있어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통일적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위·수탁 계약

가. 계약체결

1)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2) 계약체결 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생략~

다. 계약의 해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체결 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③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료 정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위탁기관의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약 시 아래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권리(운영기준 제10조의2 관련)

2) 관리수탁자의 위탁재산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치활동 등 관리위탁의 본래 목적 외의 활용 금지

마. 부정당업자 제재

1)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를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중(2024년, 2022년)

원안	검토안 및 검토의견
<p>제11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운영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p>제14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삭제 검토 필요></p> <p>○원안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는 「○○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이고,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적용될 것이므로 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p> <p><삭제 검토 필요></p> <p>○ 이 조례에 따른 캠핑장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행정재산)에 해당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르도록 하며,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법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을 준용하고 있는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제7호에서는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계약 해제·해지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이하 “고시”라 함) 제10조제4항 및 별표 4 제7호 다목1)에서는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사유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 규정된 계약의 해지 사유 외에 관리위탁 계약의 해지 사유를 추가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법제처 의견제시 17-0270 참조).</p> <p>따라서 원안 제14조의 경우 구청장과 수탁자간 위탁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를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은 낮아 보임.</p>

□ 「행정대집행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95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

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②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특권을 가진다.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5. 11. 19.] [대통령령 제26641호, 2015. 11. 18., 일부개정]

제7조(대집행 시의 준수사항) 행정대집행 시에 행정대집행 관서의 장은 대집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집행책임자는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物件)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引渡)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698호, 2014. 5. 28., 전부개정]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함.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민선8기 후반기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확대함(안 제5조·제6조·제6조의2·제7조·제3절)

- 1) (현행) 3국 2담당관 13과 1의회 2직속기관(5과) 3사업소 12읍면
 (조정) 3국 2담당관 14과 1의회 2직속기관(6과) 4사업소 12읍면
- 2) 문화관광과 ⇒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 3) 농업기술센터 과 신설: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 4) 거창골프장사업소 신설

나. 정원 조정함: 총수 변동 없음(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1. 18.~11.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제4호를 제4호·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문화정책, 예술진흥, 축제, 문화유산 보존, 박물관 등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 관광산업·치유산업, 관광마케팅, 수송대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CCTV 관제”를 “CCTV 관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농업기술과”를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로 한다.

“제3절 거창사건사업소”를 “제4절 거창사건사업소”로 하고 제3절(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거창골프장사업소

제18조의2(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친환경대중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거창골프장사업소를 둔다.

② 거창골프장사업소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륵길 410-284에 둔다.

제18조의3(소장) 거창골프장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의4(소관사무) 거창골프장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골프장 운영 계획 수립, 경영목표 관리에 관한 사항

2. 골프장 시설 유지보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골프장 경기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경제복지국) ① 경제복지국에 경제기업과, <u>문화관광과</u>,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를 둔다.</p> <p>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경제, 기업승강기 산업 지원, 투자유치, 공동체일자리, 에너지 정책 등 경제기업에 관한 사항 2. <u>문화예술·축제, 관광정책, 문화유산 보존, 박물관·수송대 등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u>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보육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p>제6조의2(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를 둔다.</p> <p>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총괄, 자연재난, 안전점검,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통신·<u>CCTV 관제</u> 등 안전에 관한 사항 2. 산림조성, 산림소득,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산림레포츠, 힐링랜드 운영 등 산림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 환경보존, 폐기물 관리, 수질·토양 개선,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창포원 운영 등 환경에 관한 	<p>제6조(경제복지국) ① 경제복지국에 경제기업과, <u>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u>,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를 둔다.</p> <p>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경제, 기업승강기 산업 지원, 투자유치, 공동체일자리, 에너지 정책 등 경제기업에 관한 사항 2. <u>문화정책, 예술진흥, 축제, 문화유산 보존, 박물관 등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u> 3. <u>관광정책, 관광산업·치유산업, 관광마케팅, 수송대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u> 4.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보육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p>제6조의2(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를 둔다.</p> <p>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총괄, 자연재난, 안전점검,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통신·<u>CCTV 관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u> 등 안전에 관한 사항 2. 산림조성, 산림소득,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산림레포츠, 힐링랜드 운영 등 산림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 환경보존, 폐기물 관리, 수질·토양 개선,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창포원 운영 등 환경에 관

현행	개정안
<p>사항</p> <p>4.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하천, 도로, 교통정책·교통지도, 운수 등 건설교통에 관한 사항</p> <p>5. 도시계획, 도시개발, 스마트도시, 건축사업·행정, 건축허가·신고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p> <p>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정,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p> <p>② 농업기술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에 둔다.</p> <p>③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한 사항</p> <p>4.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하천, 도로, 교통정책·교통지도, 운수 등 건설교통에 관한 사항</p> <p>5. 도시계획, 도시개발, 스마트도시, 건축사업·행정, 건축허가·신고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p> <p>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정,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p> <p>② 농업기술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에 둔다.</p> <p>③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행복농촌과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절 거창골프장사업소</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8조의2(설치)</u> ① 법 제127조에 따라 <u>친환경대중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거창골프장사업소를 둔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② 거창골프장사업소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륵길 410-284에 둔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8조의3(소장)</u> 거창골프장사업소에 <u>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8조의4(소관사무)</u> 거창골프장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1. 골프장 운영 계획 수립, 경영목표 관리에 관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center;"><u>2. 골프장 시설 유지보수, 안전관리에</u></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절</u> 거창사건사업소</p> <p>제19조~제2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관한 사항</u> 3. <u>골프장 경기 운영에 관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절</u> 거창사건사업소</p> <p>제19조~제21조 (현행과 같음)</p>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계	796									
정무직	1									
일반직	소계	760 759								
	3급	1	1							
	4급	4	3		1		1			
	5급	42 39	16 15	3	7 6	5 4	2	4 3	1	11
	6급 이하	713 715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연구직 (연구사)	7									
지도직 (지도사)	27 28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

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폐지이유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폐지·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3. 7. 10. 시행)됨에 따라 위임근거 및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

1) 위임조례의 위임 근거 법령 폐지

2)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은 실효성이 없어 모두 폐지됨

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안 제3조)

나) 자치분권협의회(현행 제6조~제11조)

(1) 협의회는 최초 신규 위촉식만 하고 회의 개최 실적 없음

다)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경비지원(안 제12조)

(1) 자치분권 촉진사업을 하는 기관·단체가 없어 지원 실적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0. 24.~11. 13.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등) ①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0.]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21조제8항: 2025년 1월 1일
2. 부칙 제21조제22항: 2024년 3월 29일
3. 부칙 제21조제41항: 2024년 1월 18일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제5조(생략)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15조(생략)

제16조(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하여진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법률 제15501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행하여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생략)

제18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은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

제19조~제21조(생략)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현행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2019. 5. 1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의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자치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국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제5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자치분권을 위한 군민의 각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기능)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거창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거창군의회, 관계 공무원 등 각 분야별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자치분권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토론회, 학술활동
2. 자치분권 홍보 및 활성화 추진,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사업, 각종 시범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이장의 고령화·임기 등 현 실태에 맞게 장학금 선발조건을 확대·완화하여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나. 장학금의 자격을 완화·정비함(안 제2조의2)
(현행) 2년 이상 근속하고 품행이 단정한 이장
(변경) 이장
- 다. 법령 재기재 등 정비함(안 제3조,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수요조사 후 2025년 본예산 편성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5. 29.~6.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자녀에게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의2(종전 제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이장자녀 장학금”을 “제2조에 따른 장학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년 이상 근속하고 품행이 단정한 거창군”을 “거창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학”을 “재학(정학 및 휴학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를 “제2조의2”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도”를 “군수는 제1항에도”로 “지급받은 경우 군수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로 한다.

①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 조 제목 “(장학금의 지급)”을 “(지급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 설></p>	
<p><u>제2조(장학생의 자격)</u> <u>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2년 이상 근속하고 품행이 단정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일 것</u> 2. <u>이장의 자녀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 일 것</u> 	<p><u>제2조(이장자녀 장학금 지원)</u>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자녀에게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p><u>제2조의2(장학생의 자격)</u> <u>제2조에 따른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일 것</u> 2. <u>이장의 자녀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정학 및 휴학은 제외한다) 중일 것</u>
<p><u>제3조(추천)</u> <u>읍·면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u></p>	<p><u>제3조(추천)</u> <u>읍·면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u></p>
<p><u>제6조(장학금액)</u> <u>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학생: 연 2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3.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군수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u></p>	<p><u>제6조(장학금액)</u> <u>①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학생: 연 2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3.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 <p><u>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u></p>
<p><u>제7조(장학금의 지급)</u> <u>① 장학금은 학</u></p>	<p><u>제7조(지급방법 등)</u> <u>① 장학금은 학기</u></p>

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해당 학생의 장학금을 초과하는 다른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했을 때

3.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로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

<삭 제>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조건 완화

나. 관련조문: 장학생의 자격(안 제2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

나. 장학생 선발조건에 따른 수요조사 후 예산편성

구분	산정금액	산정내역
계	23,100	40명
중학생	2,600	200천원×13명= 2,600천원
고등학생	6,500	500천원×13명= 6,500천원
대학생	14,000	1,000천원×14명=14,000천원

※ 예산 범위 내 최대 40명 선발 가능[조례 제5조(이장 정원의 15%)]

행정과장 윤광식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이장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이장의 건강보호 및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주민과 행정 간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을 신설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1) 2025년 예산 35,400천원 추경 확보 예정
- 2) 도비 6,600천원 확정 통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15~11.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강검진 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건강검진 대상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 2. 단체보험 가입 3.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 연 2회 4. 장기 우수이장 국내외 연수: 연 2회 5. 군단위 체육·수련대회: 연 1회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 2. 단체보험 가입 3.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 연 2회 4. 장기 우수이장 국내외 연수: 연 2회 5. 군단위 체육·수련대회: 연 1회 6. <u>건강검진 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시</u>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이장 건강검진 비용 지원

나. 관련 조문: 사기진작(안 제6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100%)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도비(15%)	6,600	6,600	6,600	6,600	6,600
군비(85%)	35,400	35,400	35,400	35,400	35,400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 42,000천원 = 1인 300천원 × 140명

1. 지원 대상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 이장 140명

나. 이장 정수 267명의 50% 지원

2. 지원 금액

가. 1인당 300천원

나. 격년제

작성자 행정과장 윤광식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일부개정]

-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 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 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2024. 7. 30.] [행정안전부훈령 제358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별표 7의 1과 같다.

별표 4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① 경비성격: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② 기준액
 - 통·리장: 기본수당 월 4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연 50,000원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4. “건강검진자료(이하 "검진자료"라 한다)”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문진·진찰·의사소견 및 각종 검사결과 등 건강검진에 관한 문서 또는 광·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부호·문자·음성 및 영상 등의 자료를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제24조(국가건강검진의 비용) 국가건강검진의 진찰, 상담 및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한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건강위험평가 및 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 등 생활습관개선에 사용되는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8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497호, 2024. 5. 7., 일부개정]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한다.

③ 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통보
 2. 영유아건강검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에게 통보
- ④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 청년친화도시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정함(안 제5조)
- 라.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를 정함(안 제6조)
- 마. 기초조사 및 정책조사, 홍보 및 교육, 추진실적의 평가, 지원을 정함(안 제7조~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2)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5억원 확보예정(국·도·군비)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15.~11.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구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청년,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군수는 기본계획등을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변경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군수는 기본계획등의 수립과 청년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연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나. 관련 조문: 지원(안 제10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국비 (국무조정실)	250	250	250	250	250
도비·군비	250	250	250	250	25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매년 약 5억원

1. 청년친화도시 지정 시 지정일부터 5년간 예산 지원

가. (국비) 2.5억원

나. (도비·군비) 2.5억원: 50% 이상 매칭

2. 지원사업

가. 대상: 관내 19세~45세 청년

나. 사업: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사업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泐)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청년기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 「청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9. 22.] [대통령령 제33720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이하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청년참여, 청년발전,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에 있을 것
4.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

②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서류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

③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현재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재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승강기대학생에게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금 지원 범위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함(안 제4조)

- 1) 현행)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변경)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 3) 예산 범위: 해당 경비의 지출을 위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군회계의 세출예산에 실제 계상(計上)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를 의미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20-000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5년 338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0. 30.~11.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등록금의 일부를”을 “등록금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등록금 지원) ① 군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학 등록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등록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일 것 2. 성적 등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 	<p>제4조(등록금 지원) ① 군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학 등록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등록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일 것 2. 성적 등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한국승강기대학 재학생 등록금 지원범위 확대
- 나. 관련 조문: 등록금 지원(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명,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준비	338	338	338	338	338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 338백만원=150명×2,253천 원

- 1. 지원 대상: 국가장학금 미수혜자 및 미신청자 수 150명
- 2. 1인당 연간 평균 지원 금액: 2,253천원
= 연간 등록금(6,879천원) - 장학금 평균 수령액(4,626천원)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퀘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20-0002

“예산의 범위에서”란 해당 경비의 지출을 위해 김제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김제시 회계의 세출예산에 실제 계상(計上)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더라도 그 사업수행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드시 책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할 의무까지를 시장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들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인 판단재량이 박탈될 정도로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법제처 2012. 10. 30. 의견제시 12-0347 참조), 해당 규정들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축소하여 김제시조례안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추진이나 지원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한 취지로, “예산의 범위에서 ~을 추진(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및 집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권한부여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조례안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대행을 정함(안 제6조)
- 나. 법령 개정사항 및 불부합사항, 문장 등 정비(제1조·제2조·제3조·제6조·제8조·제9조·제11조)

3. 참고 사항

- 가. 관련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지방자치법」 제28조
-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2,100천원 확보예정(위원수당)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10.~10.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9조제1항제1호)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를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중 “군내”를 “거창군 소재”로 한다.

제4조 중 “법령이나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처우개선위원회) 법 제3조의2에 따른 거창군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하여 종합계획”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성별·연령별·직종별 특

성을 반영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1. 신변안전 보호 등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2. 조사, 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인권 및 권리 보호

제10조 중 “자에 대하여 「거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를 “사회복지사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제1항 각 호의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p>
<p>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내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p>	<p>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거창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p>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6조(처우개선위원회) 법 제3조의2에 따른 거창군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성별·연령별·직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 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2. 조사, 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인권 및 권리 보호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삭 제> ▷법제처 정비권고사항(지방자치법 제29조 재기재로 삭제)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처우개선위원회 기능대행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수당

나. 관련 조문: 처우개선위원회(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 대행

나. 위원회 연 1회 개최 시 연 2,100천원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1명 × 수당 100천원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9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 (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2024. 1.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42호, 2024. 7. 2., 일부개정]

제4조의5(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2.>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2022. 6. 14.]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제4조의5,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4.]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거창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 복지를 증진하여 군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세부시행계획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사업,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정함(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향후 비용 발생 시 확보예정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25~11. 1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5조)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과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성별·연령별·직종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조건과 신변안전 보호 등을 위한 근무환경의 향상
2. 상담, 조사, 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인권 및 권리 보호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기요양지원센터)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과 신변안전 보호 등을 위한 근무환경의 향상, 상담·조사·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인권 및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지원사업

나. 관련 조문: 지원사업(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

나. 경상남도 돌봄노동자지원센터에서 도내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돌봄노동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군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는 비용 미발생

다. 향후 지원사업 종료 시 상담, 교육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연간 2,000천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시기 미정)

작 성 자 행복나눔과장 신 동 범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88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

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④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 1. 2.>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40호, 2024. 7. 2., 일부개정]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한다.
-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요양보호사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 라.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 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② 장기요양요원은 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시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7. 2.>**

1. 장기요양요원의 이름과 주소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이름과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3. 시정신청의 취지
4. 고충의 구체적 내용
5. 고충 해소 요청일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4. 7. 2.>**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한 후 14일 이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및 조치 사

항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확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

□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의 범위에 관한 법 개정 연혁
가. 현황

- 1) 군 소재 장기요양기관 50곳
- 2)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 31곳
- 2) 2019. 12. 12.개정 법령 시행전에 이미 설치·신고되어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19곳)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만 받음(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유효기간 만료일 2025. 12. 13.⇒재지정받으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게 됨)

나.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신설 2018. 12. 11.>

⑥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개정 2018. 12. 11.>

제32조 삭제 <2018. 12. 11.>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③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④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부칙 <제15881호, 개정 2018. 12. 11. 시행 2019.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제3항·제6항, 제23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56조제3항 후단, 제62조의2, 제66조의2 및 제6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2항, 제27조, 제28조의2, 제35조의4, 제37조1항제1호의2·제3호의4, 제47조의2제1항, 제6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가 완료된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제5조·제6조 (생략)

제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았거나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8조~제12조 (생략)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9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2024. 1.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현재 국가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경로당에 대하여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속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미신고 경로당의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신고된 경로당으로 양성화하여 지역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친목도모와 여가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 기준을 신설함(안 제3조·제4조)

- 1) 시설규모, 설비기준 등의 요건을 정함
- 2) 냉난방비, 양곡비, 위문품에 한정하여 지원

나.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 정비함(안 제6조)

다. 법령 재기재 사항 등 정비함(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노인복지법」 제36조·제37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경로당 식사제공 단계적 확대’ 관련 보건복지부 방침

다. 예산조치: 2025년 추계예산 1,174백만원 확보예정

라.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 법리 검토

마.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23.~11. 1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5조)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를 “거창군 경로당 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경로당 등”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비용(물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인을 위한 여가활동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2호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규모: 65세 이상 회원이 다음 각 목의 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상시 운영하고 있을 것
 - 가. 읍: 10명
 - 나. 면: 7명
2. 설비 기준: 1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이 있을 것
3. 개인 소유이거나 위법의 건축물이 아닐 것

제4조 조 제목 “(지원범위)”를 “(지원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로당 시설의 냉난방비, 양곡비, 위문품

제5조 중 “그 운영실태”를 “노인의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운영실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활성화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건강, 취미,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노인복지법</u>」 제47조에 따라 <u>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u>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경로당</u>”이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p> <p>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u>노인복지법 시행규칙</u>」 제25조에 따라 설치신고한 <u>경로당</u>으로 한정한다.</p> <p>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u>경로당</u>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이하 “<u>지원금</u>”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경로당 시설 운영비</p>	<p>거창군 경로당 등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경로당</u>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경로당</u>”이란 「<u>노인복지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거창군(이하 “<u>군</u>”이라 한다)에 신고된 <u>노인여가복지시설</u>을 말한다.</p> <p>제3조(재정지원 등) 거창군수(이하 “<u>군수</u>”라 한다)는 <u>경로당</u>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비용(물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인을 위한 <u>여가활동시설</u>(이하 “<u>시설</u>”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2호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 시설 규모: 65세 이상 회원이 다음 각 목의 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상시 운영하고 있을 것</p> <p style="margin-left: 20px;">가. 읍: 10명</p> <p style="margin-left: 20px;">나. 면: 7명</p> <p>2. 설비 기준: 1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이 있을 것</p> <p>3. 개인 소유이거나 위법의 건축물이 아닐 것</p> <p>제4조(지원 범위 등) ①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경로당 시설 운영비</p>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 5.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경로당

2. 경로당 시설의 냉난방비, 양곡비, 위문품

-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 5.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경로당 및 시설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로당 및 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의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활성화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건강, 취미,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 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미신고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신설
- 나. 관련조문: 재정 지원 등(안 제3), 지원 범위(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미신고 경로당 포함)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국비(50%)	587	587	587	587	587	2,935
도비(15%)	176	176	176	176	176	880
군비(35%)	411	411	411	411	411	2,055

- 나. 2024년 기준 국비 596, 도비 179, 군비 417

3. 관련 의견

실질적으로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신고 경로당에 대해 폭염, 한파 등의 자연재난 대비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2025년 추계예산 1,174백만원

- 1. 경로당(438곳)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1,169백만원
- 2. 미신고 경로당(8곳)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5백만원
 - 가. 냉방비: 1회 25만원×8곳 = 2백만원
 - 나. 난방비: 1회 25만원×8곳 = 2백만원
 - 다. 양곡비: 1백만원

작성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노인복지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5조(비용의 부담) ① 삭제 <2007. 4. 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삭제 <2023. 10. 31.>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78호, 2024. 10. 31., 타법개정]

제22조(비용의 부담) ① 삭제 <2024. 10. 31.>

②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12. 27., 2011. 10. 26.>

③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5. 12. 27.>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 [보건복지부령 제1069호, 2024. 11. 1., 타법개정]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65세이상의 자
3. 삭제 <2011. 12. 8.>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2019. 7. 5.>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9. 2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노인복지관: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나. 경로당: 이용정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다. 노인교실: 이용정원 50명 이상

2.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담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 실	화장실	물리치료 실	비상해비 대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 시설	강의실	휴게실	객실	공동 목욕 장	기타 대 시설
노인 복지관	1	1	1	1	1	1	1	1							
경로당						1			1	1					
노인 교실	1					1					1	1			

비 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구분 시설의 종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설 비 기 준	가.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노인복지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5.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	강사(외부강사 포함)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	-------	-------	-------------	-------	-----	-----	-----

시절별							
노인복지관	1명	2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노인교실	1명		1명				

비 고

노인복지관에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둘 수 있다.

□ 「양곡관리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2.>

1. “양곡”이란 미곡(米穀)·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가루·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관리양곡”이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4. “양곡매매업자”란 양곡의 매매 또는 매매 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양곡가공업자”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 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6. “양곡증권”이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법률 제 5662호 양곡증권정리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 양곡증권을 말한다.
7. “부채”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양곡증권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도입한 차관양곡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 다.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

는 국고보조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의 경우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경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성격·기능 등을 고려할 때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되는 지방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계약업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그 예외 기준과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그 예외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4. 1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의견 21-0063

- 「노인복지법」에서 경로당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는데,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중략~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활동 등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의 용어로 ‘미등록 경로당’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노인복지법」에서 경로당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이 아닌 별개의 시설이라면 ‘미등록 경로당’ 외에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 2016추5186

【판시사항】

[1]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안성시의회가 의결한, 마을회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시설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노인복지법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재의결함으로써 확정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제57조제1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3조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유】

2. 이 사건 조례안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조례안이 노인복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생략~

(3) 결국, 이 사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여 노인복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위반되는지 여부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	제출자	거창군수
----------	-------	-----	------

1. 제안이유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를 위하여 읍·면에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들을 두어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읍면에 기금 지출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을 신설함(안 제4조)

- 1) 분임기금운용관: 읍장·면장
- 2) 분임기금출납원: 읍·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 2) 「지방회계법」 제46조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1. 8.~11.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안전총괄과장
2. 기금출납원: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3. 분임기금운용관: 읍장·면장
4. 분임기금출납원: 읍·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4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u></p> <p>1. <u>기금운용관: 안전총괄과장</u></p> <p>2. <u>기금출납원: 안전관리담당주사</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u>제4조(회계관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u></p> <p>1. <u>기금운용관: 안전총괄과장</u></p> <p>2. <u>기금출납원: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u></p> <p>3. <u>분임기금운용관: 읍장·면장</u></p> <p>4. <u>분임기금출납원: 읍·면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u></p>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지방회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 및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9. 26.] [대통령령 제34923호, 2024. 9. 26., 일부개정]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23조(읍장·면장) 읍·면에는 읍장·면장을 두고 읍장·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2023년 4분기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중

<p>제8조(기금관리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p> <p>1. 기금운용관: 창업지원업무 담당 과장</p> <p>2. 기금출납원: 창업지원업무 담당 팀장</p>	<p>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p> <p>1. 기금운용관: 일자리지원 과장</p> <p>2. 기금출납원: 창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p>	<p>○ 제정안 제8조제1항제1호의 과장을 「○○시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위인 일자리지원과장으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8조제1항제2호의 창업지원업무 담당 팀장은 「○○시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위가 아니므로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함</p>
--	---	--

거창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의 업무 중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 소관 공공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정하여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1) 거창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 2) 정부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마련 지표대상 법령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0. 11.~10. 3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거창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국가정보원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전부개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 조치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 ② 원장은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0. 19.>
- ③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10. 19.>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9.>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87호, 2024. 3.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3. 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5.>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제3조(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안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사이버안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1.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업무

나.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업무 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다.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행하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의 기획·조정 업무

2. 사이버보안 업무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관련 기획·조정 업무 [전문개정 2024. 3. 5.]

제3조의2(사이버안보 업무의 기획·조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이하 “사이버안보정보 업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이하 “사이버보안 업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및 사이버보안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등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2.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3.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시 보안대책

②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및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조정하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5.]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협회는 제외한다.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공립 학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목개정 2024. 3. 5.]

제8조(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시행)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 및 보안수준 등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5.]

제9조(사이버보안 예방 조치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보안성 검토 결과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 암호장치, 암호모듈 및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기기(이하 “정보보호시스템등”이라 한다)의 도입·운영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3. 5.>

③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이 도입·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정보보호시스템등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에 적합한지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24. 3. 5.>

④ 국가정보원장은 정보보호시스템등을 직접 개발하여 중앙행정기관등에 보급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취약요소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보안관리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항목·절차·시기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3. 5.>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보안관리 수준을 측정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3. 5.>

[제목개정 2024. 3. 5.]

제10조(사이버보안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과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3. 5.>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5.>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3. 5.>

[제목개정 2024. 3. 5.][시행일: 2025. 1. 1.] 제10조

제11조(사이버보안 훈련)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실장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비한 통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에 훈련 일정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훈련 및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의 범위와 세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4. 3. 5.]

제12조(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3.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진단·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3. 5.>

1. 삭제 <2024. 3. 5.>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3. 제9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리 수준 측정

4.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점검 결과 취약요소가 발견된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체 진단·점검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 3. 5.>

[제목개정 2024. 3. 5.]

제13조(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직무교육 및 사이버보안에 대한 자체 진단·점검 등 사이버보안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3. 5.>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의 항목·절차·시기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3. 5.>

⑤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통보한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 3. 5.>

⑥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 3. 5.>

⑦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효율적 수행,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3. 5.> [제목개정 2024. 3. 5.]

제16조(사고 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격 주체 규명, 원인 분석 및 피해 내역 확인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으로 인한 사고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위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그 밖의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5.>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사고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합동으로 국가안보, 국익 및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국가안보, 국익 및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 3. 5.>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 법제처 정부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마련 지표대상 법령

소관 부처	법령위임 조문 및 주요내용	비고
국가 정보 원	<p>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p>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p>	<p>국가정보원 사외-662(2024. 6. 27.),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안내'공문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필수 위임사항으 로 정정하고 2025년 평가 대상 포함 (마련기한: 2024. 12. 31.)</p>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조합 등의 기관 또는 단체가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023. 6. 28.)됨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산림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비에 1천분의 23에서 1천분의 96까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위임된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정함(안 제2조·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436천만원 확보(국50%, 도15% 군35%)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1. 19.~11.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거창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제2조 관련)

사업비	수수료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를 곱한 금액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를 곱한 금액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

비고: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나. 관련 조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안 제2조·별표)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만원)

세출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436	436	436	436	436
국비	218	218	218	218	218
도비	65.4	65.4	65.4	65.4	65.4
군비	152.6	152.6	152.6	152.6	152.6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2025년 예산 436천만원

1. 관리대행자 1곳

2. 관리대행자의 업무범위

가.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다. 현장조사·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대행가능한 산림사업

가.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사.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자.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차.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카.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타.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파.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하.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거.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너.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작성자 산림과장 신중호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6호, 2024. 1. 23., 타법개정]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이하 “관리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관리업무대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방해·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을 현저히 증가시켜 청구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지정절차, 업무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8.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9호, 2024. 8. 6., 타법개정]

제25조의5(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관리대행자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관리대행자가 대행하는 관리업무

3. 관리업무대행 기간 및 지역

③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사·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7. 26.]

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2023. 7. 26.]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6. 20., 2012. 12. 24., 2023. 3. 14.>

1. 법인인감증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 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8. 5., 2012. 12. 24., 2023. 3. 1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12. 24., 2023. 3. 14.>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 6.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 12. 2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신설 2023. 7. 26.>

수수료의 범위(제25조의6 관련)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창포원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와 신축시설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창포원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정비하여 창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삭제함(현행 제8조·제19조)

1) 휴원일, 키즈카페·북카페 운영시간

나. 창포원에서의 금지행위 및 과태료를 정함(안 제11조의2, 제25조, 별표 3)

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정함(안 제20조, 별표 1, 별표 2)

라. 입장료등의 반환을 정함(안 제23조)

마. 창포원 활성화 지원을 정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8조의8·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6 및 별표 4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395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0. 25.~11.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6 및 별표 4”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개방 및 운영시간 등) ① 창포원은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한다.
② 창포원 및 시설별 운영 시간과 휴원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입장 제한) 군수는 창포원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창포원과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나.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 다.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 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아동
- 마. 입장에 따른 수용인원이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될 때
- 바.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의2(금지행위) ① 영 8조의6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노점상 등 영업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② 군수는 창포원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필요시 퇴장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1호 중 “제11조 후단”을 “제1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입장료 등)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입장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3조(입장료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등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입장하지 아니한 사람이 환불 요청을 할 때
2.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창포원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4. 입장 후 공공 및 안전 등을 위해 군수가 퇴장을 요청한 경우

② 군수는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24조(창포원 활성화 지원) 군수는 창포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창포원을 방문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장료등 감면
2. 거창사랑상품권 등

제25조(과태료)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란 별표 3과 같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을 별표 1 및 별표 2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중전 별표 2 및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6 및 별표 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8조(휴원일) ① 창포원의 정기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원일에도 야외 수변생태정원은 개방할 수 있다.</u> <u>1. 매주 월요일</u> <u>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u> <u>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휴원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제9조(개방 및 운영 시간) ① 창포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별 운영 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9조(개방 및 운영시간 등) ① 창포원은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한다.</u> <u>② 창포원 및 시설별 운영 시간과 휴원일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11조(입장 및 행위 제한) 군수는 창포원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을 제한하거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에 따른 행위제한에 해당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u></p>	<p><u>제11조(입장 제한) 군수는 창포원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창포원과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u> <u>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u> <u>나.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u> <u>다.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u> <u>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u></p>

하 아동

마. 입장에 따른 수용인원이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될 때

바.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1조의2(금지행위) ① 영 8조의6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2. 노점상 등 영업행위
-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행위

② 군수는 창포원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필요시 퇴장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안전 확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11조 후단에 따라 퇴장명령을 받고도 퇴장하지 않는 경우
- 2. 창포원 주변에서 관람자 등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 3.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람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 4. 관람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이 급박하여 필요한 절차를 갖추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2조(편의·안전 확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퇴장명령을 받고도 퇴장하지 않는 경우
- 2. 창포원 주변에서 관람자 등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 3.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람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 4. 관람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이 급박하여 필요한 절차를 갖추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9조(키즈카페·북카페 운영시간) ① 창포원 내 키즈카페 및 북카페(이하 “카페”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키즈카페 입장마감시간은 오후 5시까지

<삭 제>

지로 하며,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휴무한다.

② 군수는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키즈카페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 등) ① 키즈카페의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북카페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키즈카페의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키즈카페 입장제한) 군수는 키즈카페 이용자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 후 공공 및 안전 등을 위해 퇴장하는 경우에는 일일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신 설>

제20조(입장료 등)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입장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입장료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등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입장하지 아니한 사람이 환불 요청을 할 때

2.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창포원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4. 입장 후 공공 및 안전 등을 위해 군수가 퇴장을 요청한 경우

② 군수는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p>반환한다.</p>
<p><신 설></p>	<p><u>제24조(창포원 활성화 지원)</u> 군수는 창포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창포원을 방문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장료등 감면 2. 거창사랑상품권 등
<p><신 설></p>	<p><u>제25조(과태료)</u>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란 별표 3과 같다.</p>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제20조 관련)

1. 창포원

구분	입장료
개인	3,000원
단체: 20명 이상	1,500원

2. 주차장

구분	사용료				
	30분 이하	30분 초과~1시간 이하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2시간 초과~3시간 이하	3시간 초과(1일)
가. 소형차 1) 승용차 2) 15인승 이하 승합차 3) 1톤 이하 화물차	무료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나. 대형차 1) 승합차(버스) 2) 화물차(트럭)		2,000원	4,000원	6,000원	10,000원

3. 키즈카페

구분	사용료	
	2시간	추가
어린이	3,000원	10분당 500원
성인	1,000원	-

4. 자전거

구분	사용료	
	1시간	추가
가. 4인승, 6인승	8,000원	30분당 500원
나. 2인승	4,000원	
다. 1인승, 어린이용	2,000원	

5. 족욕체험장

기준	사용료
30분	5,000원

[별표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제20조 관련)

1. 입장료 면제 기준

- 가.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나.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사람
- 다. 65세 이상인 사람
- 라.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사. 다음의 법률(이하 이 표에서 “보훈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사람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 아.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자.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차.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타. 학생 단체 활동을 위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중·고 교원
- 파.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 하.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로서 단체관광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2. 키즈카페, 자전거대여소, 족욕체험장 감면 기준

감면대상	감면율
가.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0분의 100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자녀 또는 손자녀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수급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또는 손자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또는 손자녀 마. 보훈관련법령에 따른 유공자 등과 그 유족의 자녀나 손자녀 바. 24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 이 경우 자녀 모두 해당	100분의 50

[별표 3] 과태료(제25조 관련) <신 설>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령 및 조례 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영 제8조의6 제1항제4호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	3	3
2. 노점상 등 영업행위		제11조의2 제1항제2호	3	3	3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	3	3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유료화에 따른 시설 정비: 울타리, 매표소,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족욕체험장
- 2) 낙동강유역본부에 하천점용료 지출(385,764m²)
- 3) 근로자 인건비: 매표소 2명, 웰니스센터 3명
- 4) 창포원 활성화를 위한 거창사랑상품권 지원 등

나. 관련조문: 입장료 등(안 제20조), 창포원 활성화 지원(안 제2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세출	총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군비	1,585	395	290	295	300	305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시설공사: 총 1,490백만원

가. 2024년 1,380백만원

나. 2025년 110백만원 지출 예정

2. 인건비: 160백만원(38백만원 x 5명)/연

※ 매년 3% 증가 추산

3. 하천점용료: 110백만원(385,764m² x 290원)/연

4. 웰니스센터(족욕체험장) 운영비: 15백만원/연

5. 창포원 활성화를 위한 거창사랑상품권 지원 등은 필요시 예산확보 예정

작성자 환경과장 김성남

관련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8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 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孢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존·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5.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②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3. 민간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6. 주제정원
 -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본조신설 2015. 1. 20.]

[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6으로 이동 <2019. 1. 15.>]

제18조의8(정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정원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 1. 2.]

[종전 제18조의8은 제18조의9로 이동 <2024. 1. 2.>]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2016. 12. 2., 2019. 1. 15., 2021. 4. 13., 2024. 1. 2.>

1.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1의2.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제18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18조의19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 1. 2.>

1.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의8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37호, 2024. 7. 2., 일부개정]

제8조의6(정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8조의8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3.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 정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8조의8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정원의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24. 7. 2.>]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7.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17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10	10	10
다. 법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2	50	70	100
라. 법 제18조의8제2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2호	10	10	10
마. 법 제18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	50	70	100
바. 법 제18조의19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3호	50	70	100
사.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수목원 시설을 훼손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10	10	10
아. 제8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5	5	5
자. 제8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5	5	5
차. 제8조의2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10	10	10
카. 제8조의2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5	5	5
타. 제8조의2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10	10	10
파. 제8조의2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법 제24조제2항제1호	5	5	5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한 경우.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한 경우,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한 경우 또는 공무로 출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 제8조의2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4조제2항 제1호	5	5	5
거. 제8조의2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 제1호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너. 제8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법 제24조제2항 제2호	5	5	5
더. 제8조의6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 제2호	10	10	10
러. 제8조의6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 제2호	5	5	5
머. 제8조의6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 정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 제2호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7. 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1호, 2024. 7. 4., 일부개정]

제11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②국공립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③ 국공립수목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수목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제15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국가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가정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공립수목원”을 “국가정원”으로, “수목원 시설”을 “정원 시설”로 본다.

③ 민간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본조신설 2015. 7. 20.]

[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10으로 이동 <2015. 7. 20.>]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6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7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 조에서 “이용증”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0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9. 22.>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1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54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3.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86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06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자. 다만, 의사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사자증이나 의사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사자의 의사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2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3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본다.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군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농산물 직매장의 개설·운영, 위탁을 정함(안 제4조)
- 다.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을 정함(안 제5조)
 - 1)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 등에서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는 자에게 상품권 또는 할인권 등 지원
- 라. 농업인의 조직화 지원을 정함(안 제6조)
- 마.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조·제15조
-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40백만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31~11.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행계획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거창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① 군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산물 직매장(이하 “직거래장터등”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직거래장터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직거래장터등을 이용하는 지역농산물 판매자 모집
2. 직거래장터등의 이용 홍보
3. 직거래장터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장터등의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장터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직거래장터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거래장터등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3.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등을 위한 행사. 이 경우 그 행사에서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는 자에게 상품권 또는 할인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업인의 조직화 지원) 군수는 군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품목의 소량기획생산체계 구축
2. 농산물의 종류별 조직화
3. 소비자 조직화,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
4.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 배려하여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산물 직매장 개설·운영(안 제4조)
- 나.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지원(안 제5조)
- 다. 농업인의 조직화 지원(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비용: 10백만원
 - 1) 1백만원 × 연 10회
- 나. 거창한마당대축제 직거래장터 상품권·할인권 지원: 15백만원
 - 1) 5,000원 상품권·할인권 × 3,000명
- 다. 축제·행사 시 직거래장터 상품권·할인권 지원: 15백만원
 - 1) 5,000원 상품권·할인권 × 1,000명 × 연 3회

작성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

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레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

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3.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
4.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을 위한 생산자·소비자·사업자의 협력
5.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홍보
6.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중앙협의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

제6조(시행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현황 및 경영실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유형별 거래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단체의 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 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21호, 2016. 6. 14., 제정]

제5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농산물 직매장: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2. 농산물 직거래 장터: 비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3.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4.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를 위탁 받은 여러 품목의 농산물을 단일 상품으로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장
5.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

□ 현행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는 거창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창 농업인 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라 한다)는 군 일원에 둔다.

제3조(사업) 직거래장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참여자 모집
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기타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농업인직거래장터운영위원회의 설치) 직거래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 농업인직거래장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원 1명과 행복농촌과장, 농업인단체 대표, 농·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거래장터 운영방향 결정
2.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기준설정
3. 그 밖에 군수가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직거래장터의 운영

제11조(운영) ① 직거래장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단체 또는 법인
2.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직거래장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운영성과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도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제15조(관리비) 수탁자는 직거래장터 수탁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폐기물수집수수료, 전화요금 등 제반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비) 직거래장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제4장 보칙

제18조(준용규정)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일괄개정2022.2.3.)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종별 요금을 인상함(안 별표 1)

- 1) 인상률: 5년간 매년 10퍼센트
- 2) 요금 현실화율 목표: 2029년 41.2퍼센트(2023년 32.84퍼센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수도법」 제38조
- 2)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25.~11. 1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요금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 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업종별 요금표(제27조 관련)

업종 구분	사용단계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현행	개정안				
		현행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가정용	1~20	640	704	774	851	936	1,030
	21~30	850	935	1,029	1,132	1,245	1,370
	31이상	1,110	1,221	1,343	1,477	1,625	1,788
일반용	1~30	800	880	968	1,065	1,172	1,289
	31~50	970	1,067	1,174	1,291	1,420	1,562
	51~100	1,120	1,232	1,355	1,491	1,640	1,804
	101~300	1,290	1,419	1,561	1,717	1,889	2,078
	301이상	1,450	1,595	1,755	1,931	2,124	2,336
산업용	1세제곱미터당	750	825	908	999	1,099	1,209

관련법령

□ 「수도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7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종별 요금을 인상함(안 별표 1)

- 1) 인상률: 5년간 매년 15퍼센트
- 2) 요금 현실화율 목표: 2029년 8.6퍼센트(2023년 5.46퍼센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하수도법」 제65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
- 2)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25.~11. 1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을 “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u>시행규칙</u>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u>시행규칙</u>,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가. 하수도 사용업종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의 업종구분표에 준한다.
- 나. 상위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다.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 구분	사용량 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현행	개정안				
		현행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가정용	1~20	160	184	212	244	281	323
	21~30	220	253	291	335	385	443
	31이상	290	334	384	442	508	584
일반용	1~30	200	230	265	305	351	404
	31~50	240	276	317	365	420	483
	51~100	280	322	370	426	490	564
	101~300	330	380	437	503	578	665
	301이상	420	483	555	638	734	844
산업용	<u>1세제곱미터당</u>	200	230	265	305	351	404

관련법령

□ 「하수도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18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6.>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